

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7- 21호

『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』

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」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17년 3월 10일

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

**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
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**

1. 제안이유

금년부터 시행중인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영과 관련해 혐오시설의 직접 영향권에 있는 지역주민을 위한 지원제도의 조속한 시행을 통하여 주민 복지혜택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기금운영계획 수립에 관해 회계연도 개시 전에서 회계연도로 규정함(안 제7조 1항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20일(월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, 팩스 또는 이메일로 인천광역시의회의장(참조 : 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, 전화 032-440-6223, 팩스 032-440-8764, 이메일 kbboss76@korea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의견제출자의 주소·성명(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) 및 전화번호

제출자	해당 조항	찬반여부 및 사유	비고
○주 소 : ○성 명 : ○연락처 :			

※ 다른 서식 사용 가능

4. 참고사항

-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.(붙임)
- 비용추계서 1부.(붙임)

인천광역시조례 제 호

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
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해마다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에” 을 “매 회계연도
마다” 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기금운용계획) ①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을 <u>해마다 해당 회 계연도 개시 전에</u> 수립해야 한 다. ② (생 략)	제7조(기금운용계획) ① ----- ----- 매 회계연도 마다----- --. ② 현행과 같음

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련법령	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- 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- 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“내용은 별지 작성”
관련법규 정비대상	
관련자료	

□ 장사 등에 관한 법률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·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와 위법한 분묘설치의 방지를 위한 시책을 강구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

□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과 협의 등을 통하여 화장시설,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설치·조성에 관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된 경우에는 해당 장사시설 등의 운영을 지역주민에게 우선적으로 맡기는 등 지역주민을 지원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는 화장시설, 봉안시설 또는 자연 장지를 설치·조성하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기금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을 지원할 수 있다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 발생 요인

- 해당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 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-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설치 운영으로 협오 시설이라는 이미
지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주민들의 위한 복지 및
생활환경 개선 사업을 조속히 시행코자 관련 조항을 정비
하는 내용으로 별도의 재정 지출을 수반하지 않음

4. 작성자

- 산업경제위원회 유제홍 의원